[제3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

2020. 12. 15.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 1

Ⅱ.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 3

Ⅲ. 지정 요건 ····· 7

Ⅳ. 지정 절차 및 관리 ····· 9

Ⅴ. 요양급여 적용기준 ····· 12

[붙임1]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 17

[붙임2]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 23

[붙임3]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 29

[붙임4] 호흡기감염병 진료체계 예시 ····· 32

[서 식] 제출 서식 ····· 34

1 추진 배경 및 추진 방향

□ 추진 배경

○ (목적)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체계 정비**

○ (필요성)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타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구분이 어려워 **일선 의료기관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의 원활한 진료 제한***

* 코로나19 감염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중단(의료인 격리) 우려 등

-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인·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클리닉** 필요성 제기

□ 추진 방향

◆ **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국민안심병원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체계 확립

○ (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구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일차의료 제공**

-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또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고 민간 의사가 진료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 (선별진료소) **보건소**는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 있는 자** 등에 대한 사례판단·**진단검사(검체채취) 중심**으로 운영

- **대형병원**은 기존 내원 환자 대상으로 **의료기관 보호 차원**에서 운영하며, **중소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통합·연계 운영**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용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하고, 동선분리된 호흡기전용입원 운영 등 **입원환자 중심으로 내실화**

〈 호흡기·발열 환자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향 〉

◆ **일차의료** 단계에서 **호흡기·발열 환자의 안전한 진료체계가 부재**하여 경증 환자가 상급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작동 미흡**

⇒ 이로 인한 의료기관 감염 위험 증가, 의료인 피로 가중, 증상별 적절한 진료 곤란, 진료 공백 가능성 증가 등

<table>
<tr><th></th><th>보건소</th><th>의원</th><th>병원</th><th>종합병원</th><th>상급종합병원</th></tr>
<tr><td>사전진료</td><td rowspan="3">선별
진료소</td><td></td><td></td><td colspan="3" rowspan="3">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td></tr>
<tr><td>진단검사
(검체채취)</td><td></td><td></td></tr>
<tr><td>입원치료</td><td></td><td></td><td></td></tr>
</table>

⬇

◆ 호흡기·발열 환자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table>
<tr><th></th><th>보건소/
공공시설</th><th>의원</th><th>병원</th><th>종합병원</th><th>상급종합병원</th></tr>
<tr><td>사전진료</td><td colspan="2">호흡기전담클리닉</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진단검사
(검체채취)</td><td rowspan="2">선별
진료소</td><td>선별진료소</td><td rowspan="2" colspan="3">선별진료소
(기존 내원 환자 중심)</td></tr>
<tr><td>호흡기전담
클리닉</td></tr>
<tr><td>입원치료</td><td></td><td></td><td colspan="3">국민안심병원
(입원 중심)</td></tr>
</table>

2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1 진료 대상

○ **상기도 감염**(URI; upper respiratory infection) 증상,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Influenza like illness) 등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

○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는 경우

○ **중증기저질환자** 및 **만성호흡기질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는 기존 다니던 병원 이용 권장

※ **구체적인 진료 대상**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 등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2 운영 유형

○ (개방형 클리닉) **지자체(보건소)**가 설치·운영하고 보건소의사, 민간의사 등이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

* 설치 장소는 보건소,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운동장 등을 활용

○ (의료기관형 클리닉)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지정**

* 의료전달체계內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 또는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하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도 지정 가능

3 설치 규모

○ 감기 등 호흡기감염 환자의 발생 규모와 의사 1명이 진료 가능한 환자수를 고려하여 '20~'21년에 **전국 1,000개소 설치 목표**

○ 중앙정부는 인구수, 보건소 현황 등을 고려한 **시도별 설치 목표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운영 유형, 운영 규모*** **등을 판단**

* 단일 기관에서 복수의 진료실 및 의료인력 운영 가능("통합형 클리닉")

4 역할 및 기능

○ 지역 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수행

* 문진·진찰 - 검사(필요시) - 진단 -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 제공

○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수행하거나 선별진료소 의뢰

○ 환자 간 교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필요시 의사가 **방문 前 전화상담** 실시

*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과정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필요성 판단

5 진료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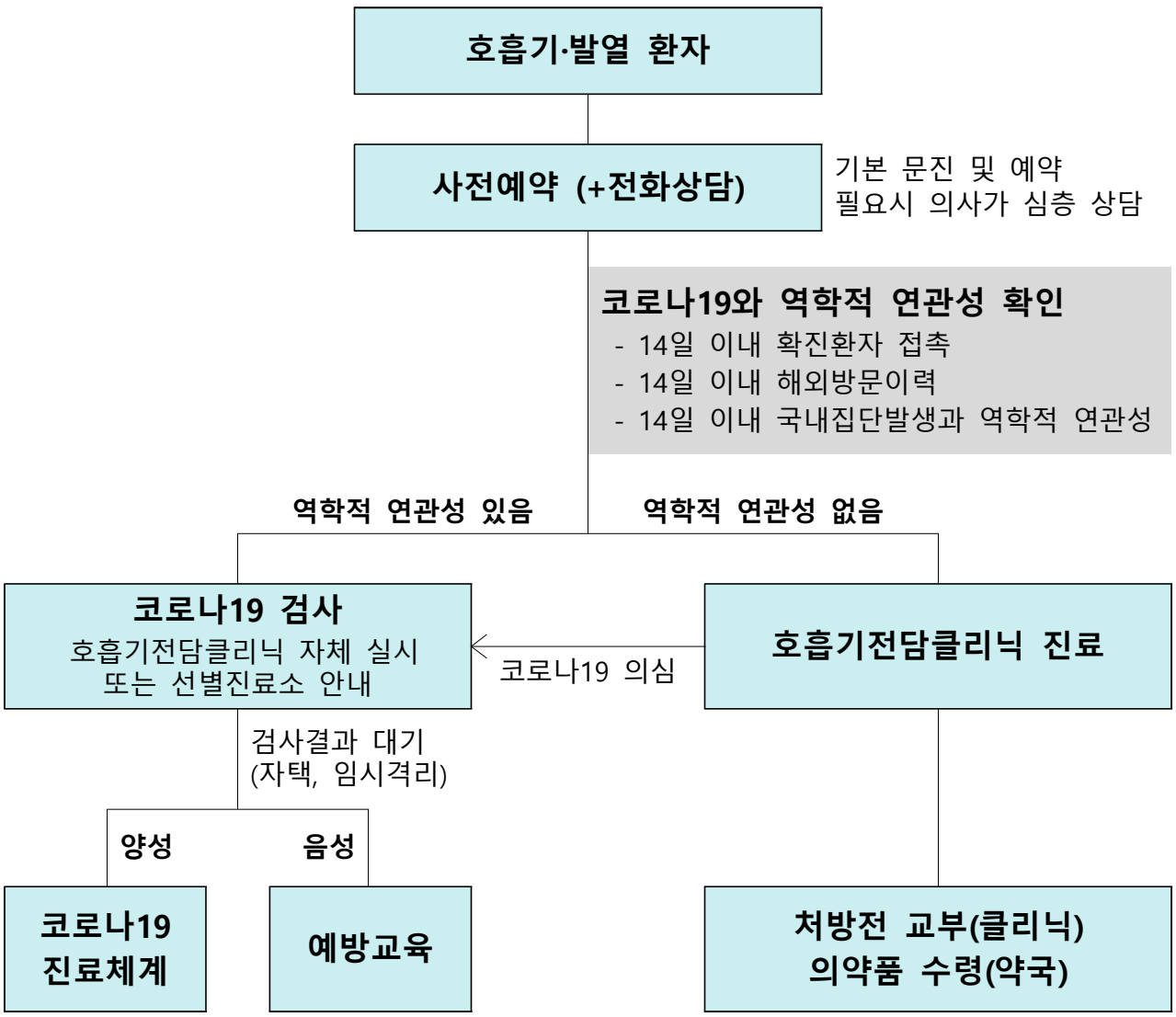

〈 진료절차별 주요 내용 〉

구분	인력	주요 내용	비고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문진/예약) 간호·행정 (필요시 상담) 의사	진료 대상 여부 확인	문진 및 전화상담 체크리스트 활용
현장 접수 * 상황에 따라 현장 접수 허용	간호·행정	진료 대상 여부 확인하여 현장 접수	진료 대상이 아닌 경우 타 진료기관 안내
진단 및 처방	의사	진단 및 처방 * 코로나19 검사 필요성 판단	코로나19 검사 필요시 자체 실시 또는 선별진료소 의뢰
결과 확인 및 조치	의사	(양성) 보건소 연락 (음성) 예방교육	

〈 문진 및 전화상담 체크리스트 예시 〉

구분	내용		결정
코로나19 역학적 연관성	14일 이내 확진환자 접촉	예□ 아니오□	하나라도 '예'인 경우 코로나19 검사 자체 실시 또는 선별진료소 안내
	14일 이내 해외방문이력	예□ 아니오□	
	14일 이내 국내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예□ 아니오□	
증상 상세내용	현재 나타나는 증상은?	□발열(37.5℃ 이상) □기침 □가래 □콧물 또는 코막힘 □인후통 □호흡곤란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기타 ( )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 )	
	복용한 약이 있는지?	( )	
기저질환 여부	중증기저질환인지?	예□ 아니오□	중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인 경우 기존 병원 방문 안내
	만성호흡기질환인지?	예□ 아니오□	
기타 필요한 내용		( )	

〈 참고 :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절차 〉

□ 필요성

○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前 사전예약·전화상담 절차**를 통해 환자 상태를 **사전에 확인·준비**토록 하여 안전한 진료 여건 확립

-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전화상담 활용 권장**

- **반드시 전화상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요청하거나 사전예약 과정에서 상담 필요시 의사 상담 연계

□ 전화상담·사전예약 절차

○ 개방형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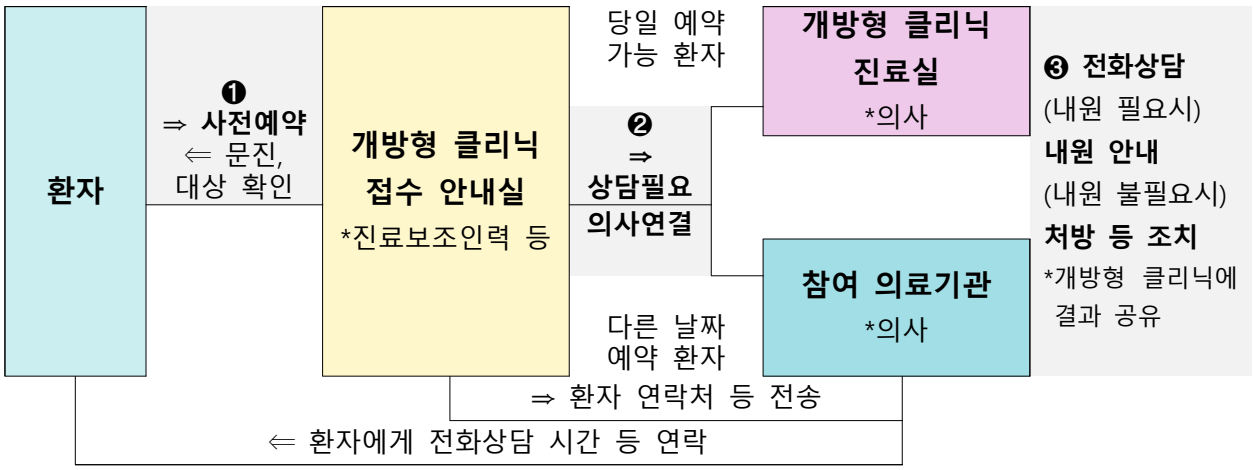

○ 의료기관형 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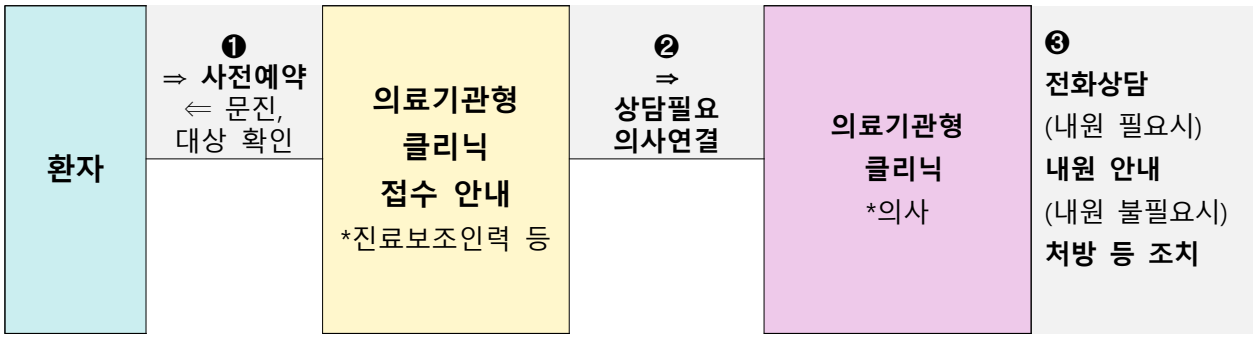

3 지정 요건

1 사업 참여 대상

○ (개방형 클리닉)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

* 보건기관 소속 의사(관리의사, 공중보건의 등) 및 지역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에 참여

○ (의료기관형 클리닉) ▲**의원**, ▲**병원**, ▲**종합병원**(국민안심병원에 한정)

* **'상급종합병원'**은 국민안심병원인 경우에도 **참여 불가**하며, **'A형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의무화**

2 시설·설비 기준

※ 동 기준과 다른 경우라도 지자체(시도/시군구)별 전문가 자문체계 등을 운영하여 감염 예방 가능하다고 판단 시 '기준 준수'로 간주

○ **비말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동선 분리, 환기 등 환경관리 요건을 고려**

- **독립건물**인 경우 인접 건물에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건물 간 일정 거리를 확보하거나 창문 등으로 비말 차단 가능할 것

- **복합건물**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고(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 타 용도의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를 권장하며 벽, 문 등으로 구역 분리하여 비말 차단 가능할 것

  * 병원급 의료기관은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타 진료구역 이용환자와 동선 분리

-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는 동선 관리**가 권장

  *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소독 및 환기를 자주 하는 등의 감염관리 조치 시행

○ 접수, 대기실, 진료실, 검체채취실(선택), 방사선촬영실(선택), 보호구 탈의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코로나19 진단검사 중요성, 진료 완결성 등을 고려하여 검체채취 기능 구비 권장

-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시술은 가급적 피하며 개인 보호구 착용 및 충분한 환기* 필요

* (예) 공조설비가 시간당 12회 공기순환 조건인 경우 최소 30분 이상 환기

〈 공간별 구비 물품 예시 〉

접수실	대기실	진료실	방사선 촬영실	보호구 탈의실	검체채취실
·안내문 비치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티슈(환경 표면 소독용)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등 *환자 간 거리 확보(2m 이상 권장, 최소 1m)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산소발생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방사선촬영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이동형음압기 설치 또는 자연환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폐기물함 등	·음압설비(헤파필터) *검체채취실이 어려운 경우 검체채취부스 활용 가능

3 인력 기준

○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환자 분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4 운영 기준

○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협의를 통해 일부 시간대만 운영* 가능**

* 지역 주민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준수**(붙임2)

○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체계 구비**

4 지정 절차 및 관리

1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

2 지정 세부절차

○ (개방형 클리닉) ①지자체-지역의료계 협의 → ②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③의료인력 모집 → ④지정 및 운영

- 지자체(보건소), 지역의료계(지역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 간 **개방형 클리닉 운영 방식 협의**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공간 확보, 시설·설비 구비***

* 지자체(시도/시군구)별로 **전문가 자문체계**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사** 모집* 및 **간호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확보

* 민간의사 모집이 어려운 경우 보건기관 의사 중심으로 운영 개시하고 추후 민간의사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가능(환자 수요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 개방형 클리닉 필요 인력 예시 〉

	월	화	수	목	금
진료실	의사 1 (A의원)	의사 1 (B의원)	의사 1 (C의원)	의사 1 (D의원)	의사 1 (E의원)
	간호인력 1인 (보건기관 인력 지원)				
공통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 인력 (보건기관 또는 지자체 인력 지원)				

- **개방형 클리닉 지정**(서식1, 서식2) 및 **심평원에 정보 공유***(서식3)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관련문의: 심평원 자원관리부, 033-739-4877)

○ (의료기관형 클리닉) ①지자체에 사업 참여 신청(보조금 교부신청) → ②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③현장확인 → ④지정 및 운영

- 클리닉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자체(보건소)에 사업 참여 의사 표시**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클리닉 **시설·설비 등 지정요건 구비**

- 지자체에 지정 신청서(서식5) 및 체크 리스트(서식6)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설비, 인력 등 **지정요건 확인***

  * 개방형 클리닉과 동일하게 지자체별 **전문가 자문체계**를 운영하여 감염 예방 측면에서 **시설·설비의 적절성 확인** 권장

-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서식7) 및 **심평원에 정보 공유***(서식8)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호흡기전담클리닉, 관할 보건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관련문의: 심평원 자원관리부, 033-739-4877)

3 지원 내역

○ (요양급여)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시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여 **환자부담은 일반의료기관과 동일**

- **개방형 클리닉**은 보건기관 수가를 산정하고 **진료에 참여한 민간 의사**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방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지원료' 지급사업 추진

○ (국고보조금) **시설·장비 구축** 등을 위한 **국비 1억원 지원**

  * 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 참고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지정요건을 갖추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 및 관련 요양급여 산정 가능**

○ (개인보호구) 보호복, N95마스크, 덧신, 속장갑, 고글, 페이스쉴드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요조사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가 관내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개인보호구 소요를 취합하여 신청

④ 사후 관리

○ **지정권자인 지자체(시군구)가 일차적인 사후 관리* 담당하며** 지역 여건에 맞도록 클리닉 운영 유도

* 시설·설비 및 인력 운영의 적절성 등

- 지자체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사후 관리 가능**

○ **복지부**(심평원), **시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실시

⑤ 지정 취소

○ **중요 요건 위반*** 또는 **2회 이상 보완 요청 미이행** 시 지정 취소하고 요양급여 적용 중단

* 의료법령, 건강보험법령 등 주요 법령 위반, 시설·설비·인력 요건 위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 클리닉 운영이 어렵다고 지정권자가 판단

○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사유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 발생 가능

5 요양급여 적용기준

1 개방형 클리닉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 (급여대상)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적용방법

○ 개방형 클리닉에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보건기관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Ⅰ.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민간의사 또는 보건기관 소속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모두 포함

※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하는 민간의사의 경우 별도 보상

3 환자 본인부담률

○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지원하는 보건기관에서 산정하며,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 개방형 클리닉 환자 진료내역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동시 기재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의사 면허번호는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개방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 단,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호(2020.7.14.)에 따른 개방형 클리닉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

  * 관련수가: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2 의료기관형 클리닉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클리닉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급여대상)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진료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호흡기 전담클리닉 - 의료기관형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가. 초진	
	AH361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62.66
	AH362	(2) 의원	56.43
		나. 재진	
	AH363	(1)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45.41
	AH364	(2) 의원	40.34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AH31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270.76
	AH314	(2) 의원	240.44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가. 일반 격리관리료	
	AH33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501.03
	AH334	(2) 의원	387.08
		나. 음압 격리관리료	
	AH34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1,655.53
	AH344	(2) 의원	1,275.15

3 요양급여 산정지침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환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산정방법	1.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여 산정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 2.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에 따른 '전화상담 관리료(AH114, AH214)'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 호흡기감염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환자를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한 경우
산정방법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2. 환자가 동일 의료기관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 양쪽에서 모두 진료받은 경우에는 1회만 산정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AH310)'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산정방법	1. 일반격리관리료는 선별진료소 내 설치된 일반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화장실·샤워시설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방문당 1회 산정함 3.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2, AH342)' 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4.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따라 산정함

④ 환자 본인부담률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1] 수급권자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 적용수가, 급여기준, 청구방법 등에 따라 작성하여 청구

⑥ 기타 행정사항

○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관련 수가 적용

붙임1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1 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table>
<tr><th>연번</th><th>질 의</th><th>답 변</th></tr>
<tr><td>1-1</td><td>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방법은?</td><td>('20.9.30.까지 진료내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7648호(2020.7.14.)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계획"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함
- 수가산정 예시
<table>
<tr><th>구분</th><th>산정 가능 수가</th><th>청구 기관</th></tr>
<tr><td>보건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td><td>보건기관 수가</td><td>보건기관</td></tr>
<tr><td>민간의사 진료 시</td><td>개방형클리닉 진찰료,
감염예방관리료,
전화상담 진찰료,
전화상담 관리료</td><td>민간의사 소속 의료기관</td></tr>
</table>
('20.10.1.이후 진료내역)
- 호흡기 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1부 Ⅰ.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청구함
* MX999(기타내역): "C/개방형클리닉"을 기재
- 수가산정 예시
<table>
<tr><th>구분</th><th>산정 가능 수가</th><th>청구 기관</th></tr>
<tr><td>보건기관 소속 의사 진료 시</td><td rowspan="2">보건기관 수가</td><td rowspan="2">보건기관</td></tr>
<tr><td>민간의사 진료 시</td></tr>
</table>
* 민간의사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td></tr>
</table>

연번	질 의	답 변
1-2	보건기관에서 개방형 클리닉을 운영 지원하여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산정 시 의사 면허정보 기재 방법은?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함 -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한 경우에도 진료를 직접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하며, - 이때, 의료기관 소속 의사의 원소속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변경신고는 불필요

2 의료기관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 "1항 3목"란에 기재
2-2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지?	요양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2-3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중복 지정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수가를 우선 산정하며, 국민안심병원 수가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 '감염예방관리료'의 산정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13)'를 산정하며,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AH310)'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3, AH343)'를 우선 산정하며,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AH332, AH342)'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연번	질 의	답 변
2-4	호흡기전담클리닉 내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를 채취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히 검체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으며, 검체채취 후 선별진료소 내 격리실에 대상자를 격리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2-5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언제 산정 가능한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격리한 경우, 코로나19 검체채취한 환자에게 의료적 처치(예, 수액치료 등)를 제공하는 경우 등 진료상 필요하여 격리한 경우에 산정 가능함
2-6	동일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감염 증상 등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한 외래환자를 진료 시 산정 가능함
2-7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환자가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내원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방법은?	환자가 동일한 날에 동일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2-8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호흡기감염 환자가 아닌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병원의 경우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를 전화로 진료한 경우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하고,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의원의 경우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992, 2020.5.8.)」에 따라 산정함

연번	질 의	답 변
2-9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의료기관형 클리닉 방문을 위해 사전예약 등을 상담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는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의사가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에게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 단순히 방문 전 사전예약 등을 위한 상담의 경우에는 산정 불가함
2-10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건강보험수가 청구 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키지 않음
2-11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산정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12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를 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13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어 전화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산정 불가하며,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시에만 산정 가능함
2-14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함
2-15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진료의사 자격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연번	질 의	답 변
2-16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일 경우, 촉탁의가 호흡기 감염 증상을 가진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내원하여 외래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2-17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전일제가 아닌 시간을 정해서 운영(예. 오전) 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 일반환자 내원 시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함
2-18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이 아닌 환자가 내원 시 진료가 가능한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이 아닌 환자가 내원하여 불가피하게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는 가능함 - 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하고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와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산정 불가함
2-19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 시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이 아니더라도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가능하며,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환자와 동선 분리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함
2-20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 등은 클리닉 업무만 '전담'해서 근무해야 하는지?	'의료기관형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전담'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는 클리닉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원내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클리닉 운영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음.

3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시 의료급여 절차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야 함.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2020-46호, '20.2.2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함
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진료 시 청구방법은?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명기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를 기재하여 청구 *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내역 전송 시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 사용

4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위탁진료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1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의 호흡기감염 증상에 대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진료 의뢰하는 경우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3항 (8)의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붙임2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1. 운영 기본수칙

1)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안내문 및 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입구에 설치한다.

2) 개인보호구를 구비한다.

*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안면보호구(고글 등),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구, 덧신 등

3) 클리닉 내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 이를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사전에 제공하고 정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4) 클리닉 운영 담당자별 역할분장을 한다.

2. 호흡기전담클리닉의 동선관리

1) 동선관리의 원칙

① 의료인력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한다.

- 직원은 마스크(KF94 이상)를 착용하고, 환자와 가능한 2m 거리를 유지한다.
-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며, 보호자와 동행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 다른 보호자 및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2m 거리를 유지한다.

②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일방향의 동선을 유지하여 타 환자와 교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며, 입출구가 동일할 경우 진료시간을 적절히 조절한다.

2) 구역별 배치[1)]

① 주출입구

- 주출입구는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를 시간차를 두고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 입구 진입 전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한다('여기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 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내선 표시).

② 진료 접수

- 클리닉 방문의 최초 접점 영역이며, 클리닉 입구에 배치하여 대상 환자를 확인한다.
- 적절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의료진은 보호구를 착용한다.

1) Ministry of Health Singapore(2017), Public Health Preparedness Clinic Guide.

③ 환자 대기구역

- 환자 예약을 시간차를 두어 대기를 최소화한다.
- 공간이 충분한 경우 환자 대기 구역을 환자별 개별 영역으로 분리하며, 어려운 경우 환자 간 가능한 2m 이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한다.
- 수술용 마스크, 알코올 손 소독제 등을 대기 구역에 비치하며, 환자 사이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④ 진료실

- 진료실은 표면 소독이 가능한 가구들을 추천하며 천으로 된 가구(의자 등)나 커튼,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소독이 어려운 재질은 피한다.
- 진료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이 있어야 하며 음압기 사용을 권장한다.

⑤ 검체채취실(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검체채취실은 별도로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한다.
- 검체채취로 인한 호흡기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음압설비를 갖춘다.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사용 후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한다.

· 음압설비를 갖춘 경우 출입구나 창문 등은 출입 시를 제외하고는 닫아둔다.

· 음압이 아닌 자연환기인 경우 출입구 및 창문은 상시 열어두어 환기를 최대화한다.

-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진은 지침에 따라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가래가 있는 환자의 경우 가래 유도를 위한 기침 등의 행위는 금한다(에어로졸 가능성 있음).
-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한다.
- 검체채취 후 환자가 접촉하거나 비말 오염이 가능한 거리 이내 표면은 소독한다.

3.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감염관리

1) 손 위생(hand hygiene)

① 손 위생은 환자 접촉 전후에 시행하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기타 오염물질과 접촉하였거나 환자의 주위 환경에 노출된 모든 경우에 시행한다.

②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 40~60초,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경우 20~30초 동안 손 위생을 시행한다.

④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구

①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마스크(KF94 이상), 일회용 장갑,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며, 호흡기 비말을 생성하는 시술 시에는 긴팔가운(또는 전신보호복)과 안면보호구(또는 고글)을 추가한다.

② 개인보호구는 환자와의 접촉 형태 및 진료상황과 행위(직접 접촉 여부, 에어로졸 생성 처치 여부 등)에 따라 선택한다.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 보호복 (덧신 포함)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접수, 안내		●		●	●		
진료, 간호		●		●	●		●
청소·소독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	●		●
의료폐기물 운반	●			●	●		
< 검체채취하는 경우만 해당 >							
호흡기 검체채취 검체 취급(검체채취실 등)		●		●	●		●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자료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9판), 질병관리본부, 2020 참고							

③ 개인보호구는 사용원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착·탈의).

-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2. 가운을 입는다.
	3. KF94(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4.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5.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6. 고글이나 안면보호대를 착용한다.
	7.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

	1.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
	2. 장갑만 벗기는 경우,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 장갑을 2중으로 낀 경우 장갑을 벗고, 가운의 끈 등을 조절하여 가운을 벗고, 최종적으로 장갑을 벗는 순으로 할 수 있음.

	3. 손 위생을 시행한다.
	 4.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
	5. 마스크를 제거한다.
	6.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치료장비와 기구 관리

① 진료 시 가능한 한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후 적절히 폐기하며* 재사용하는 경우는 철저히 소독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및 오염 세탁물류(환자 침구, 환자복, 분비물이 묻은 린넨류) 등을 모두 포함

① 기구 세척직원은 세척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③ 소독제 사용 시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확인하여 소독제 희석 및 적용 시간, 소독제 유효기간 및 유효농도 등 권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4) 환경 소독

① 소독 장소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 의자, 접수 창구,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등

② 환경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붙임3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참고용)

진료 진행 절차	
접수 인력	**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 1) 내원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방문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도록 안내 2) 입구 선별 : 모바일 문진표 또는 미리 배포한 문진표 수거 확인 ※ 현장에서 서면 문진표 작성 시 가급적 피수검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펜 사용 3) 환자 확인 후 접수 및 대기실 입실 ①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여행(방문)력,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② 현재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체온 기록 ※ 가급적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환자	**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 1)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 2) 미리 작성해 온 문진표 제출(콜센터 접수가 안 된 경우) 3) 환자 확인 절차 후 접수 및 대기실 입실 **나. 클리닉 내 이동 및 진료** 1) 다른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가능한 2m 이상 간격을 두고 안내에 따라 이동 2) 의사 진료, 필요시 검사실로 이동하여 검체채취(상기도 검체채취) **다. 귀가 또는 격리** 1) 진료 결과에 따라 처방 등 조치 2) 코로나19 검체채취를 클리닉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의료진	**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진 보호구 착용** 1) 진료: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필요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2) 검체채취 :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3) 환경소독 :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나. 호흡기전담클리닉 환자 진료, 검사

1) 환자 진료 및 검사 : 임상증상 및 문진 확인 후 필요시 검사시행

2)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검체채취(상기도 검체채취) 후 1차 용기 소독(70% 알코올)하고 라벨 부착하여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수송 용기(2, 3차)에 포장 또는 냉장(4℃) 보관

  * 상기도검체 1개 (비인두와 인후 도말), 객담이 있는 경우 하기도검체 1개 추가

- 검체 취급 후 일회용 장갑(이중장갑인 경우 겉장갑)교환 및 손위생

  * 장갑 외에도 보호구가 호흡기 비말에 오염된 경우 즉시 교체

- 검체시험의뢰서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이송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신고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일괄 신고

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기구 및 환경소독

1) 기구소독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 매회 사용 후 소독

2) 환경소독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후 30분 이상 환기(실내인 경우)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환경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등을 이용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

※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희석 방법(예)
○ 희석배율 : 0.1% 혹은 1,000ppm
○ 희석방법(1mL 희석액 기준)
· 4% 락스를 1:40 으로 희석 : 물 1,000mL, 4% 락스 25mL
· 5% 락스를 1:50 으로 희석 : 물 1,000mL, 5% 락스 20mL
○ 접촉시간: 구멍이 없는 표면은 10분 이상, 물품 침적 시 30분 침적

3) 청소 및 소독작업 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격리 의료폐기물상자에 즉시 버림

4)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름

5)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 씻기

	※ 환경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① 환경 또는 물체 표면에 대한 소독제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사 설명서 및 주의사항(소독제 희석방법, 소독시간, 보관방법, 유효기간 등) 준수 ② 우선 환경부의 승인제품 여부를 확인하고(초록누리http://ecolife.me.go.kr), 제품에 표기된 제조업체의 지침, 주의사항 등에 따라 준비 ③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말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며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 ④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은 소독 직전에 희석하여 사용(1000ppm)하며 처리시간은 10분 이상 유지 필요 ⑤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⑥ 소독제에 따라 희석액 조제 및 사용 후에는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희석하여 사용(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라. 환경소독 후 다음 환자 입실 안내** **마. 환자 이송** 의료진 판단에 따라(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지침 참조) 이송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연락
안내 인력	**가. 안내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자의 보호구 착용** 호흡기 보호구(N95 또는 KF94 이상),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착용 **나. 환자 동선 관리** 1) 환자 접수, 대기실, 검사실 입실 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환자 입실 상황을 수시로 살펴 안내(환자 간 가능한 2m 이상 간격 유지) 2) 귀가 또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환자 귀가 안내 3) 의료기관 이송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이송 의뢰(119 등)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시 보호구 착용** 1) 검체수집 및 포장 : 호흡기보호구(N95 또는 KF94 이상),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 2) 검체운송(파손 없이 포장 된 경우) : 일회용 장갑

붙임4 호흡기감염병 진료체계 예시

1. 보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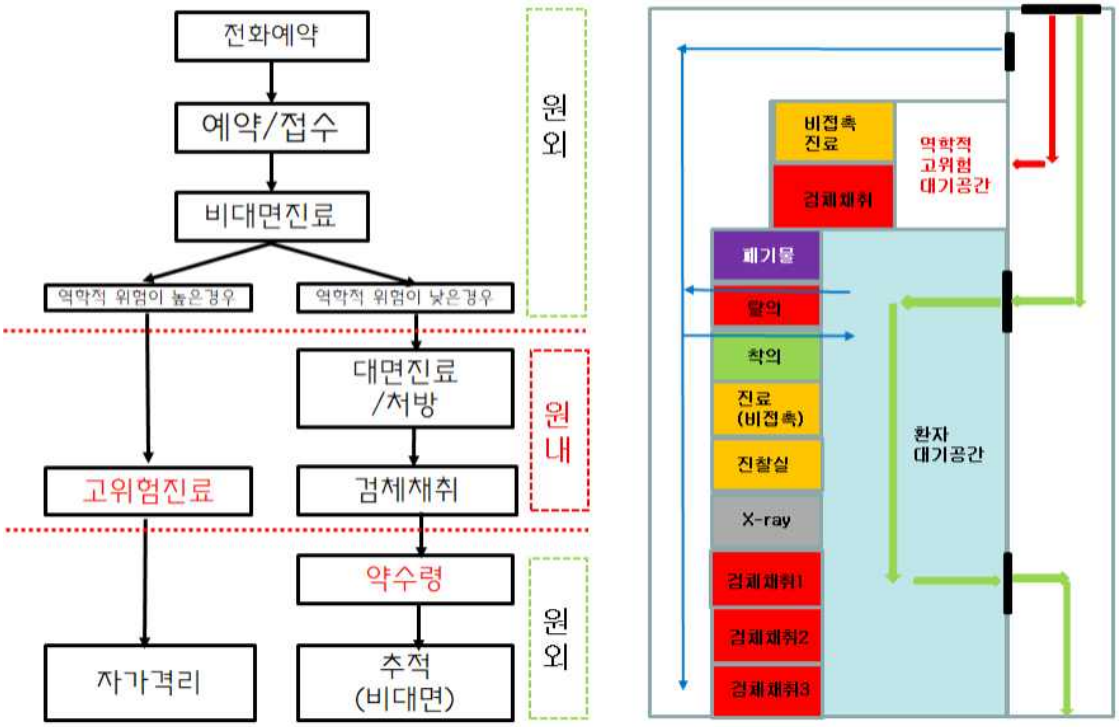

2. 의원급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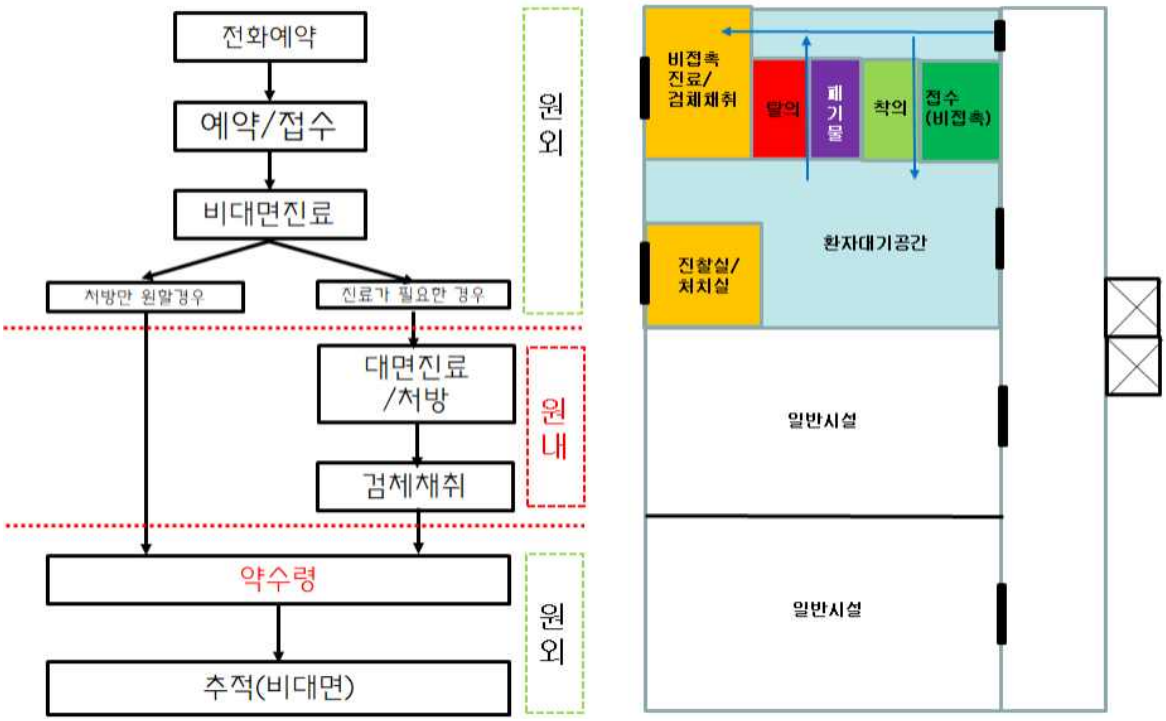

3. 병원급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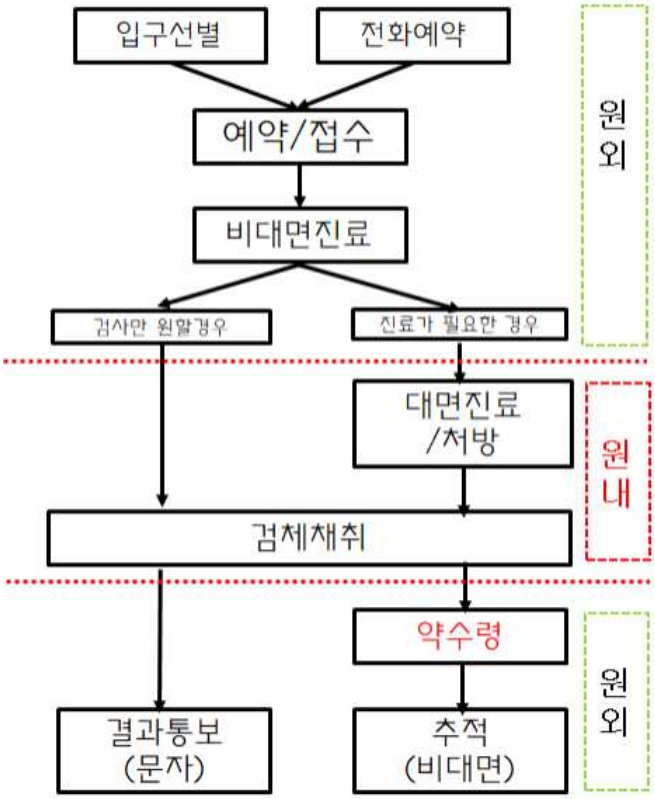
입구선별
전화예약
예약/접수
비대면진료
검사만 원할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
/처방
검체채취
약수령
결과통보
(문자)
추적
(비대면)
원외
원내
원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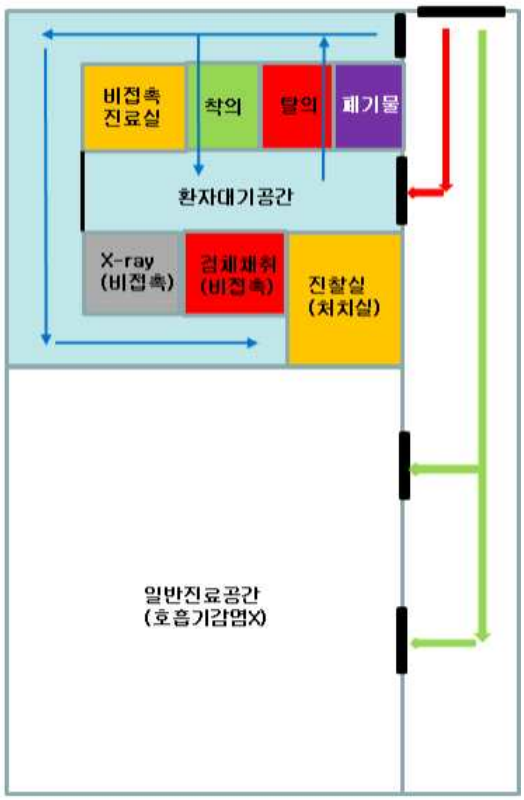
비접촉
진료실
착의
탈의
폐기물
환자대기공간
X-ray
(비접촉)
검체채취
(비접촉)
진찰실
(처치실)
일반진료공간
(호흡기감염X)

서식1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명 칭 :

주 소 :

지 정 일 : . . . 부터

위 기관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2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

소속 의료기관(요양기호) :

성 명 :

생년월일 :

지 정 일 : . . . 부터

위 사람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3 개방형 클리닉 정보 서식 (지자체→심평원)

개방형 클리닉 정보 서식					
지자체 명칭			보건소 명칭		
개방형 클리닉	명칭		주소		
	연락처		지정일자		
	설치위치	□보건소 □도서관 □공영주차장 □시립/구립연수원 □운동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기타( )			

운영 현황					
건물형태	□ 독립건물	□ 복합건물 *건물의 일부층 사용	코로나19 검체채취 여부	□ 실시	□ 미실시
격리실 운영 여부	□ 일반격리실 □ 음압격리실 □ 미운영		운영규모	□ 기본형 (1개소)	□ 통합형 (개소)

운영시간[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참여인력[2]	요양기호 (*필요시)	원소속기관	성명	주간 근무요일	근무 시작일자[3]	근무 종료일자[4]
의사						
기타인력	간호인력 (명),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명)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 작성요령
1) 요일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간을 기재(예시: 09:00 ~ 14:00)
2)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3) 의사의 경우 지정일자
4) 의사의 경우 지정취소일자(지정취소일로부터 관련 수가 청구 불가)

서식4 환자 상태 기록지 (개방형 클리닉)

<table>
<tr><td>성 명</td><td></td><td>성 별</td><td>☐ 남 ☐ 여</td><td>주민번호</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td></tr>
<tr><td>기저질환</td><td colspan="3">☐ 무 ☐ 유 (_____)</td><td>임신</td><td>☐ 무 ☐ 유 (_____주)</td></tr>
<tr><td rowspan="4">증 상</td><td colspan="5">☐ 발열(37.5℃ 이상)
☐ 기침 ☐ 가래 ☐ 콧물 또는 코막힘 ☐ 인후통 ☐ 호흡곤란
☐ 구토 ☐ 설사 ☐ 복통 ☐ 근육통
☐ 기타 (_____)</td></tr>
<tr><td colspan="3">☐ 맥박 (회/분) ☐ 호흡 (회/분)
☐ 혈압 (mmHg/ mmHg)</td><td>중증도 분류</td><td></td></tr>
<tr><td>흉부 X선 결과</td><td colspan="2">☐ 정상 ☐ 폐렴
☐ 기타 ( )</td><td>산소 포화도</td><td>%</td></tr>
<tr><td colspan="5">※ 최근 24시간 이내 약 복용 여부 ( )</td></tr>
<tr><td>상태 및 특이 사항</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6">처방 사항</td><td></td><td>약품명</td><td>1회투약량</td><td>1일투여횟수</td><td>총투약일수</td><td>비고</td></tr>
<tr><td rowspan="2">의약품</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주사제</td><td></td><td></td><td></td><td></td><td>원내/원외</td></tr>
<tr><td></td><td></td><td></td><td></td><td>원내/원외</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 조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서식5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서 (의료기관형 클리닉)**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서(의료기관형 클리닉)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 국·공립 ☐ 의료법인 ☐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 ☐ 개인 ☐ 기타		

요양기관 운영 현황

건물형태	☐ 독립건물	☐ 복합건물 *건물의 일부층 사용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 운영	☐ 미운영
			코로나19 검체채취 여부	☐ 실시	☐ 미실시
격리실 운영 여부	☐ 일반격리실 ☐ 음압격리실 ☐ 미운영		운영규모	☐ 기본형 (1개소)	☐ 통합형 (개소)

소속 인력[1]	의사	간호인력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 담당인력
	( )명	( )명	( )명

운영시간[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위 요양기관은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의료기관 클리닉 운영 가능일자[3]	
		대표전화번호	

※ 작성요령
1)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인력
2) 요일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간을 기재(예시: 09:00 ~ 14:00)
3) 서식5에 따른 항목을 모두 충족 가능한 일자(※ 관련 수가는 지정일자부터 청구 가능)

서식6 **호흡기전담클리닉 체크 리스트**

호흡기전담클리닉 체크 리스트 (앞)		
□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항목	**내 용**	**O/X**
전화상담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前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시설 · 설비 · 물품	·(독립건물인 경우) 인접 건물에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건물 간 일정 거리를 확보하거나 창문 등으로 비말 차단이 가능한가?	
	·(복합건물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고(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 등 감염예방수칙 준수), 타 용도의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를 권장하며 벽, 문 등으로 구역 분리하여 비말 차단이 가능한가?(해당란 체크) □별도 출입동선 □공조분리 □재순환방지 □구역분리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타 진료구역 이용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였는가?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는 동선 관리가 가능한가?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가?	
	- (접수실) □안내문 비치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티슈(환경표면 소독용) □혈압계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기타( )	
	- (대기실) □손소독제 □소독티슈 □기타( )	
	- (진료실) □음압설비 □자연환기 □산소발생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기타( )	
	- (방사선촬영실) 미설치 시 “미설치”라고 표기 □음압설비 □자연환기 □방사선촬영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기타( )	
	- (보호구탈의실) □음압설비 □자연환기 □손소독제 □소독티슈 □폐기물함 □기타( )	
	- (검체채취실) 미설치 시 “미설치”라고 표기 □음압설비(헤파필터) □기타( )	

호흡기전담클리닉 체크 리스트 (뒤)

□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항목	내 용	O/X
인력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했는가? * 의사, 간호인력,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응급 대응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었는가?	
운영 기본수칙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안내문 및 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입구에 설치했는가?	
	·개인보호구를 구비했는가? *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안면보호구(고글 등),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구, 덧신 등	
	·클리닉 내 모든 직원에게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가?	
	·클리닉 운영 담당자별 역할분담을 했는가?	
동선관리	·의료인력과 환자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했는가?	
감염관리	·손 위생을 시행하는가?	
	·각 상황별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었는가?	
	·진료 시 가능한 한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후 적절히 폐기하며 재사용하는 경우 철저히 소독하는 등 치료장비와 기구관리를 할 수 있는가?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 의자, 접수 창구,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히 소독을 할 수 있는가?	
기타	·그 밖에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가?	

서식7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의료기관형 클리닉)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의료기관형 클리닉)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 . . 부터

위 기관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8 의료기관형 클리닉 정보 서식 (지자체→심평원)

의료기관형 클리닉 정보 서식					
지자체 명칭			보건소 명칭		
의료기관형 클리닉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주소		
	연락처		지정일자		
운영 현황					
건물형태	□ 독립건물	□ 복합건물 *건물의 일부층 사용	선별진료소 운영 여부	□ 운영	□ 미운영
			코로나19 검체채취 여부	□ 실시	□ 미실시
격리실 운영 여부	□ 일반격리실 □ 음압격리실 □ 미운영		운영규모	□ 기본형 (1개소)	□ 통합형 (개소)

운영시간[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 미운영 □ 운영(시간)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 작성요령
1) 요일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간을 기재(예시: 09:00 ~ 13:00)